

## 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 결정

조세심판원은 2025. 5. 13. 청구법인(이하 "A사")이 글로벌 반도체장비 업체인 일본 완전모회사(이하 "B사")와 사이에 B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조립서비스(이하 "설치 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설치 서비스용 부품(이하 "쟁점부품")을 B사로부터 무상수입하면서 세관장에 납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하 "쟁점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조심 2022중5524, 2025. 5. 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울촌은 조세심판원에서, ① A사는 B사에게 설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쟁점부품의 수입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A사고, ② 쟁점부품은 A사의 주요사업인 설치 서비스에 사용된 것으로, A사의 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울촌은, 앞서 경쟁업체의 동일 쟁점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조심2022중6103, 2023. 6. 21.) 법원에 소송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품의 수입은 국내 고객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국내 고객사는 반도체 제조설비 공급계약에 따른 대가만을 부담할 뿐 쟁점부품에 대하여 별도의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쟁점부품에 관하여 A사 외의 다른 수입자를 상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수입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본건과 같은 글로벌 장비공급 거래에서 세수일실이나 탈루가 전혀 없음에도 사업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거래구조를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울촌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해외장비 공급거래의 경우 국내에서의 설치 및 조립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비로소 검수가 완료되어야 공급이 확정되는데, 국내고객사가 직접 설치에 필요한 부품 또는 사양변경 및 개조·개량용 부품을 판단하여 수입, 통관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국내 자회사인 A가 수입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조항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화의 무상수입의 경우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면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형성되어 온 거래구조에 대한 수입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수입부가가치세 불공제 위험이 해소된 점, 나아가 반도체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용 장비 공급거래의 수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 Related Areas

조세

### Contact

조윤희 변호사  
02-528-5680  
yhcho@yulchon.com

최용환 변호사  
02-528-5709  
ywchoi@yulchon.com

성수현 변호사  
02-528-5887  
shseong@yulchon.com

오영석 공인회계사  
02-528-5214  
ysoh@yulchon.com

정현 공인회계사  
02-528-5524  
hjeong@yulchon.com